

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중소기업의 기술개발, 창업보육, 기술 및 경영지도, 인증취득지원 및 각종교육 등의 지원을 수행하여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) 한국항공대학교 부설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(이하 '본 센터'라 한다.)라 칭한다.<개정 2008.6.9>

제3조 (사업)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- ① 산학 공동기술개발 사업 <개정 2008.6.9>
- ② 삭제 <2008.6.9>
- ③ 창업 보육지원 사업
 - 1. 삭제 <2008.6.9>
 - 2. 삭제 <2008.6.9>
 - 3. 삭제 <2008.6.9>
- ④ 삭제 <2008.6.9>
- ⑤ 중소기업 현장애로기술 및 경영지원사업
- ⑥ 국제 및 국가 인증취득지원 사업
- ⑦ 삭제 <2008.6.9>
- ⑧ 삭제 <2008.6.9>
- ⑨ 삭제 <2008.6.9>
- ⑩ 기타 이센터의 목적달성과 지역 중소기업육성지원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조 직

제4조 (조직) 센터에는 소장, 운영위원, 간사, 전문위원, 연구원, 기술지원단, 경영지원단 및 행정지원실 등을 둔다.

제5조 (소장) 1. 소장은 센터사업에 참여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2.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업무를 총괄한다.
3.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신설 2008.6.9>

제6조 (간사) 간사는 본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5급이상의 직원중 소장이 임명하며, 간사는 행정지원실의 업무를 통괄하고 센터의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.<개정 2008.6.9>

제7조 (연구원 및 전문위원) ① 센터에는 상임연구원, 비상임연구원, 특별연구원, 전문위원, 연구보조원을 둔다.<개정 2008.6.9>

1. 상임연구원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하고 비상임 연구원은 본 대학교 외의 인사중 소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.
2. 특별연구원은 본 센터의 목적에 찬동하는 외부 인사로서 소장이 위촉한다.
3. 전문위원은 센터의 관련분야의 전문직 기술을 가진 자로서 소장이 위촉한다.
4. 연구보조원은 본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부 및 대학원생을 원칙으로 하되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타 대학 및 대학원의 재학생이나 그 밖의 자격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다.
5. 삭제 <2008.6.9>

제8조 (기술지원단) 센터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을 지원한다.

1. 연구원은 당연직 기술지원단원이 되고 의무적으로 관련 기술지원을 수행한다.
2. 본 대학에 재직하는 교원이나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대학원생이 자원할 시 소장의 인정으로 기술지원단의 단원이 될 수 있다.
3. 단원의 기술지원은 본 센터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소정의 기술지원비를 지불할 수 있다.

제9조 (경영지원단) 이 센터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경영 및 행정지원을 한다.

1. 본 대학의 경영학과 및 교양학부 등에 재직하고 있으며 관련분야에 해당되는 교원은 경영지원단의 단원이 될 수 있다.
2. 단원의 경영·행정지원은 본 센터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정의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 (자문위원) 자문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센터의 발전 및 센터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내의 관련 인사로 하고 소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08.6.9>

제11조 (창업연구회) 우리대학 학부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하여 대학 내의 창업분위기를 고양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둔다.

제12조 (행정지원실)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지원실을 두며 센터 자체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.<개정 2008.6.9>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13조 (운영위원회)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.

제14조 (위원회의 구성)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되, 2인 이상은 중소기업대표 및 대외관련 인사로 위촉하고 나머지 인원은 본대학교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08.6.9>

제15조 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사업의 검토
2. 사업계획, 과정 및 결과의 검토, 평가
3. 센터의 규정의 제정 및 개정

4. 기타 센터 운영상의 중요 사항

제16조 (회의)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장 제 정

제17조 (재정) 본 센터의 재정은 자체수입금, 정부 지원금, 기업체부담금, 대학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18조 (회계년도) 회계연도는 사업시행 기관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그 밖의 경우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9조 (출납) 회계에 관한 사항은 재정지원 기관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그밖의 사항은 본 대학의 규정에 따른다.

제20조 (예산 및 결산)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소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.<개정 2008.6.9>

제21조 (사업비 운영 및 관리) 사업비 운영 및 관리 규정은 사업 시행관련 기관의 규정에 맞추어 따로 정한다.

제22조 삭제 <2008.6.9>

제23조 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이외의 센터운영 및 사업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2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규정명칭 변경)은 200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